

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

제정 2011.03.01 1차 개정 2014.04.01
2차 개정 2014.08.08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23조의5에 의거 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산업체위탁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산업체의 범위) 산업체위탁교육에 있어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.
2.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·도지사에게 등록된 신문사 등
3.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4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
5.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
6.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(사업주 포함)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
7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8.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9.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제3조(위탁형태) 단독위탁과 연합위탁으로 구분하며, 산업체 대표와 본 대학 총장과의 위탁교육계약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한다.

제4조(설치학과)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하여 설치·운영한다.

제5조(학생수 및 학급편성) ①모집학생수는 관할청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다.

②학급편성은 20명 이상의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%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) ①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우리 대학 학칙 및 학사 내규에 의한다.

②위탁생이 위탁산업체의 동의 없이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할 수 있다. 단, 위탁산업체의 도산·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본 대학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생의 선발기준) ①위탁생의 선발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이어야 한다.

②위탁생은 위탁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에서 정한 입학전형 절차에 의거 지원

하여야 한다.

③위탁생은 재직 중인 산업체와 관련 있는 학과나 담당업무와 성격이 같거나 유사한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.

제8조(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운영) ①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를 당연직으로 하며 위탁산업체 임직원 및 우리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1/2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.

③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위탁의뢰산업체 적부에 관한 사항
2. 위탁생의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
3. 산업체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학교와 산업체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탁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세칙) 위탁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할청의 운영지침과 본 대학 학칙·학사내규 및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